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안내문과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세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아닌 해당기관에서 선정하며, 해당기관에서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4.05.03.(금)]에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
- 사업주체 :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업체 :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38층 15개동 총 1,779세대 중 일반공급세대 1,339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7년 6월 예정
- 공급대상

주택형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59.7600	59	59.7600	20.5400	80.3000	44.3400	124.6400	92	18
70.8600	70	70.8600	23.9900	94.8500	52.5800	147.4300	240	48
79.8300	79A	79.8300	26.1500	105.9800	59.2400	165.2200	713	142
79.8100	79B	79.8100	25.6600	105.4700	59.2300	164.7000	92	18
84.9200	84A	84.9200	28.1200	113.0400	63.0300	176.0700	30	6
84.6000	84B	84.6000	27.7100	112.3100	62.7800	175.0900	172	34
합계							1,339	266

※ 해당 주택형, 타입, 세대수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타입 (약식)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시책추진	합계
	대전 광역시	충청남도	세종 특별자치시							
59	1(5)	-	-	1(5)	1(5)	1(5)	1(5)	9(45)	4(20)	18(90)
70	2(10)	1(5)	1(5)	2(10)	2(10)	2(10)	2(10)	24(120)	12(60)	48(240)
79A	7(35)	3(15)	3(15)	7(35)	3(15)	3(15)	10(50)	71(355)	35(175)	142(710)
79B	1(5)	-	-	1(5)	1(5)	1(5)	1(5)	9(45)	4(20)	18(90)
84A	1(5)	-	-	-	-	-	1(5)	3(15)	1(5)	6(30)
84B	1(5)	1(5)	1(5)	1(5)	1(5)	1(5)	1(5)	17(85)	10(50)	34(170)

※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세대수입니다.

## II. 분양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05.0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홈페이지</li> </ul>
건분주택 개관	2024.05.1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분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50번지</li> </ul>
특별공급 접수	2024.05.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인터넷 청약접수</li> <li>건분주택 방문접수(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li> </ul>
당첨자 발표	2024.05.2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홈(<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개별 조회 가능</li> </ul>

## III. 분양가 및 계약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시에만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추천대상자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li> </ul>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시책추진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상이)</li> <li>※ 지역별 예치금 : 대전광역시 250만원 /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200만원</li> </ul>

### ■ 입주자저축 변경 시 기준 (본 아파트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사용 가능)

- 청약저축 → 청약예금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예치금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면적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시 해당 구간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청약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분: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p>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p> <p>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p>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p>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선도부지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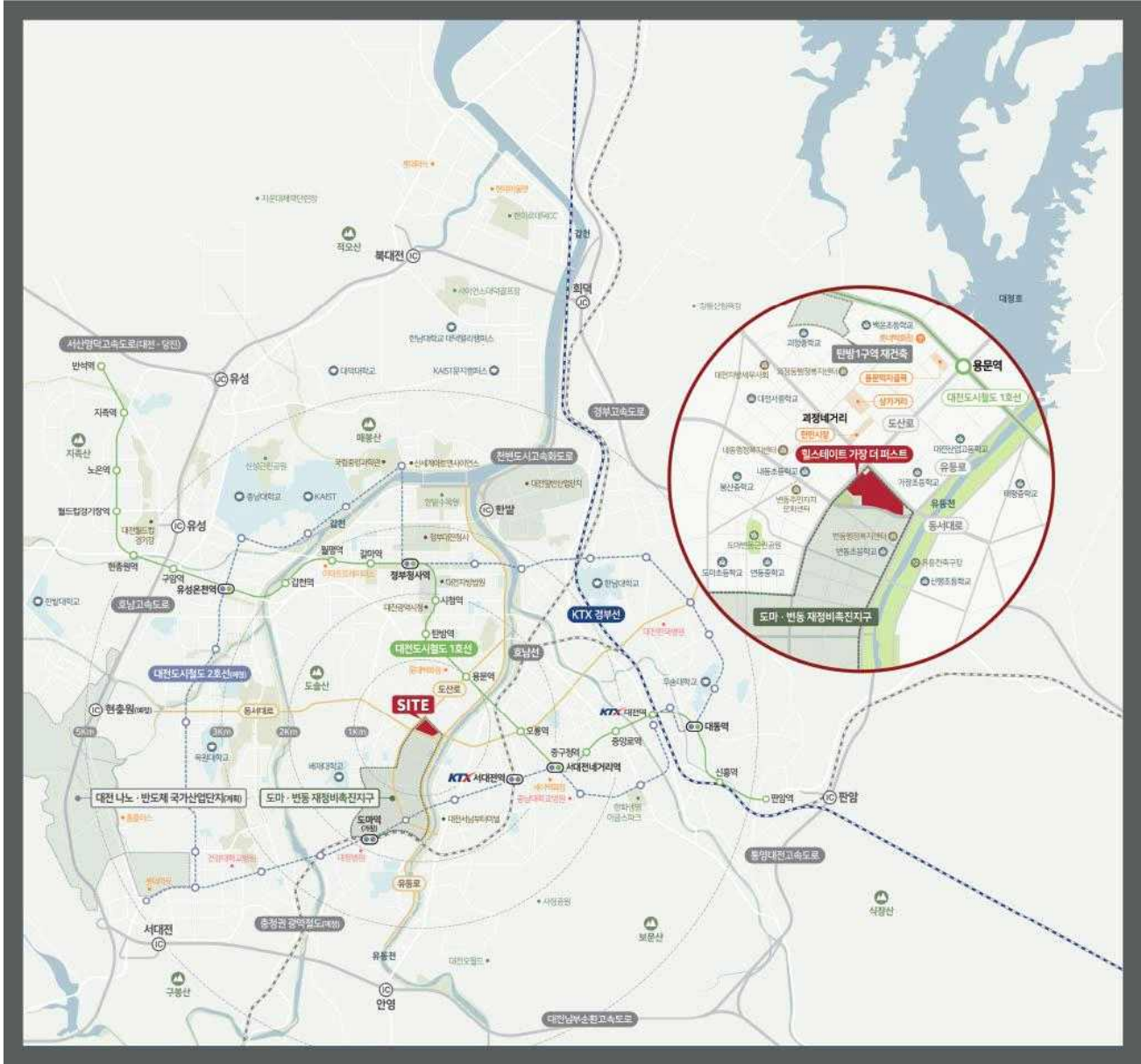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 예정일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가 가능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한 예비대상자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개별 조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신청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에 관계없이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 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견본주택(☎042-537-9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I. 위치도 및 특징점



약도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li> <li>•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50번지</li> <li>• 분양문의 : 042-537-9131</li> </ul>